

등록번호	영업처-1338
등록일자	2016.01.25.
결재일자	2016.01.2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대리	영업계획팀장	영업처장	고객사업본부장
최지호	신철자	이권수	전결 01/26 이승범
협조자	차장	김영하	

『신분당선 2단계(정자~광고) 개통에 따른』  
**연락운송협정 갱신(안)**

2016. 1



# 신분당선 2단계 개통에 따른 연락운송협정 갱신(안)

'16. 1. 30.자 개통되는 신분당선 2단계(정자~광고) 운송기관인 **경기철도(주)의 연락운송<sup>1)</sup> 편입을 위하여 연락운송협정을<sup>2)</sup> 갱신코자 함**

※ 1단계(강남~정자) : 신분당선(주), 2단계(정자~광고) : 경기철도(주)

## I 운영 개요 (신분당선 2단계)

- **개통일** : 2016.1.30(토) 첫차부터
- **개통구간** : 정자 ~ 광고, 13.8km, 정거장 6개소, 차량기지1개소



- **열차운행** : R/H 5분, N/H 8분 (6량 1편성)
- **운임체계** : 수도권도시철도 운임체계 적용, 단, 별도운임 부과  
※ 별도운임 : 900원, 단, 1단계(강남~정자)와 2단계(정자~광고) 연계 이용 시 1,200원

1) 연락운송 : 수도권 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동일한 운임체계에서 승차권 하나로 상호연결 운행하는 것

2) 연락운송협정 : 도시철도법 제34조에 의거, 연락운송기관들이 운임의 정산 및 승차권 호환 등 제반조건 협약

## II 연락운송협정 갱신

### □ 관련근거

-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- 3001('15.12.30) 「신분당선 연장(정자~광고) 최초운임 신고수리 알림」
  - 신분당선 연장(정자~광고)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 및 별도 운임 징수
- 서울시 교통정책과 - 21517('15.10.5) 「제38차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회의 결과 알림」
  - 신분당선 연장 개통일('16. 1.30) 및 프로그램 적용 일정 확정
- 경기철도(주) KCR 2016-058('16.1.13) 「연락운송협정 체결 요청」

### □ 협정 갱신

- 갱신사유 : 신규운송기관인 경기철도(주)가 신분당선 2단계(정자~광고) 운송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락운송 대상기관으로 편입
- 체결기관 : 10개 운송기관
  - 메트로, 철도공사, 도철, 인천교통공사, 메트로9호선(주), 공항철도(주), 신분당선(주), 용인경전철(주), 의정부경전철(주), 경기철도(주)
- 체결일자 : 2016. 1. 29 (금) (\* 효력발효 : 2016.1.30)
- 주요내용 : 신분당선 2단계 개통에 따른 경기철도(주) 연락운송 편입
  - 연락운송협정 개정(안)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 #1
- 체결방법 : 경기철도(주)에서 운송기관 직접방문 후 순차 날인

## 합의서 체결

- 체결사유 : 기존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운임정산 규칙 준수
- 체결기관 : 협정 체결기관과 동일
- 체결일자 : 2016. 1. 29 (금)
- 주요내용
  - 1회용 교통카드 별도운임 위탁발매수수료를 10% 적용 (1항)
  - 정기권 별도운임 배분은 수도권도시철도 운임정산체계와 동일 적용 (1항)
- 체결방법 : 부서장 날인

## Ⅲ 행정 사항

- 운송약관 정비(개정) : 향후 개정 시 일괄정비
  - ※ 개정 내용 : 약관 제3조(정의) 12항 “신분당선구간”에 경기철도 포함
- 협정서 직인 날인 : 경영관리처 협조

별첨 : 1. 연락운송협정(안) 1부  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  
3. 운임정산 등에 대한 합의서(안) 1부  
4. 관련근거 문서 사본 각 1부. 끝.

